

1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①항(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가입 대상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등 재난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공유주방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욕장업(찜질방업), 게임제공업(오락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오락실,PC방),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실내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전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3 가입자

- 다중이용업소 업주(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주)

4 가입시기

-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보험기간 만료전까지(미가입 공백이 없어야 됨)

5 제출시기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폐업)후 가입증명서(폐업사실증명원) 등 사본을 서대문소방서 팩스(FAX: 02-2187-8352) 또는 담당자 메일로(ljhyuk205@seoul.go.kr) 전송

6 벌칙규정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이하 과태료**
(미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기타 문의사항은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02-6981-5484)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